

## 울산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가. 임용예정 직위, 인원 및 주요업무내용

임용직위	임용직급	인원	주요업무내용
감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3급 상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li><li>• 국정감사·감사원·교육부·지방의회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li><li>•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li><li>• 반부패 청렴대책 계획 수립·추진</li><li>•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 실시</li><li>•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 추진</li><li>•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li></ul>

나. 근무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다.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임용예정일 2025. 10. 1.)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2. 임용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 3. 응시 자격

### 가. 기본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 \*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 \*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기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정지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들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상한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나. 경력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

경 령 요 건	비 고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u>1개</u> <u>이상의</u> <u>요건을</u> <u>갖출 경우</u> <u>응시 가능</u>

경 력 요 건	비 고
<p>*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p> <p>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p> <p>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p> <p>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p> <p>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u>1개</u> <u>이상의</u> <u>요건을</u> <u>갖출 경우</u> <u>응시 가능</u></p>

**다. 특별요건: 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적격성심사 시 가점 부여**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대상 아님)

##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 전형을 통해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서류심사	응시원서, 경력 증명 서류, 실적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응시자 제출 서류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능력·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면접시험	면접에 의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 특별요건 :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

##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적격성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5. 8. 4.(월) ~ 8. 8.(금)	2025. 8. 22.(금)	2025. 8. 29.(금)	2025. 9. 12.(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use.go.kr, [교육·행정정보 - 시험공고 - 지방공무원임용])에 게재

##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임용시험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 ※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use.go.kr, [교육·행정정보 - 시험공고 - 지방공무원임용])에서 내려받기

나. 접수기간 : 2025. 8. 4.(월) ~ 2025. 8. 8.(금) 09:00~17:00

-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2층 총무과(인사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 052-210-5725)

- ※ 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 우편 발송 주소

(우)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 봉투에 '개방형직위(감사관) 응시원서 재중' 명기 >

- ※ 대리인 제출 시 ① 위임장[서식10] ② 응시자 신분증 ③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 응시수수료 : 10,000원

- 방문 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납부
- 우편 접수자는 우편 발송 시 **응시수수료 현금 동봉**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7. 제출 서류

구 분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서식1]
2. 응시원서 1부	[서식2]
3. 이력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적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li> <li>▶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li> </ul>	[서식3]
4. 자기소개서 1부	[서식4]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5]
6.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서식6]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7]
8.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서식8]
9. <b>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li> <li>▶ 재직기간, 직위(급), <b>담당업무</b>, 인사 변동사항, <b>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b> 등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li> <li>▶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되거나 담당 분야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b>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도의 증빙서류(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b></li> <li>▶ 상시근무(주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경력인정범위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li> <li>▶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li> </ul>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석사·박사)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포함 제출</li> </ul>	
11.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구 분	비고
13. 학위논문(석사·박사) 및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각 1부	[서식9] 해당자에 한함
14.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5. 특별요건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16. 위임장 1부	[서식10]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함께 제출

※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보수 수준

###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9,296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9.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10.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원서접수 결과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연장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us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담당자 ☎ 052-210-5725)

[서식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응시분야	응시직급
	감사관(개방형직위)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3급 상당)

연번	제 출 목 록	제 출 여부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석사·박사) 사본 1부	
10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12	학위논문(석사·박사) 및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각 1부	
13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14	특별요건 증명서 1부	
15	위임장 1부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2]

## 응시원서

본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위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개방형 3급)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표

울산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위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개방형 3급)
성명	(한글)	(한자)	
2025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 날인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장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위 :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개방형 3급)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

· 방문 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우편 접수자는 우편 발송 시 응시수수료 현금 동봉하여 납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서식3]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직위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개방형 3급)	성 명		
현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나. 교육배경						
학력 및 전공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비 고		
	<i>00과</i>	<i>' 00.00.00.</i>	<i>학사</i>			
	<i>※ 블라인드 면접으로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i>					
논문, 저술, 賞 등						
다. 기술 및 자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i>※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i>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자격 검정기관			
	<i>※ 유효기간 내 대상만 기재</i>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라. 학위논문						
학위명	학교구분	논문제목	취득년월일	비 고		
	<i>대학교</i>					
	<i>대학원</i>					
<i>※ 블라인드 면접으로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i>						
마. 연구실적논문						
연번	구 분	논문제목	발표일자	발표기관	발표자	비 고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위 :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개방형 3급)

나. 교육배경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다. 기술 및 자격

- ① 자격증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 ② 어 학 : 유효기간 내 대상만 기재

라~마.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논문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바. 실무경력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 경력증명서는 관련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직위(급),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③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⑤ 직위(급) 기재 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 ⑥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4]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  
.....  
.....  
.....  
.....

2025. . .

작성자 ○ ○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앞으로의 각오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명, 출생지, 가족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단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서식5]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2025. . .

작성자 ○ ○ ○ (서명)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구체적 실천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십시오.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합니다.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2매 별도)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단면인쇄)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수행계획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합니다.
- \* 학교명, 출생지, 가족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6]

##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 의견서)

※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 격 요 건	비 고
경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함)를 3년 이상 담당 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li> <li>○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li> <li>○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li> <li>○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li> <li>○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li> <li>○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자격</li> </ul> </li> </ul>	<p><u>1개</u> <u>이상의</u> <u>요건을</u> <u>갖출 경우</u> <u>응시 가능</u></p>

응시자 성명 :

(서명)

[서식7]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 시험응시자로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8]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b>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b> <b>[개인정보의 수집·이용]</b>	<b>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b> <b>[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b>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개방형직위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개방형직위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2025. . 성명 : (인)	2025. . 성명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10]

## 위 입 장

### 1. 위임자

성 명		응 시 직 위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개방형 3급)
생년월일-성별		응 시 번 호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전 화 번 호			
주 소			

### 2.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성별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개방혁직위(감사관) 임용시험 응시자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자(응시자)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1호 서식>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성명	( )	생년월일	
담당 업무	기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5년 월 일

○○○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